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회용 컵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자원순환보증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 1회용 컵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1회용 물티슈를 1회용품에 추가하여 사용을 억제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148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바목을 삭제한다.

다.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한다)이 가격에 포함된 1회용 컵 제16조제1호가목 중 “법 제15조의2에 따른 비용기보증금(이하 “비용기보증금”이라 한다)”을 “자원순환보증금”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속캔,”을 “금속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을 제외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합성수지재질”을 각각 “폴리염화비닐 재질을 제외한 합성수지재질”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폴리염화 비닐(PVC)”을 “폴리염화비닐”로 한다.

별표 1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1회용 물티슈(합성수지 재질이 함유된 것으로 한정하며, 물을 적서 사용하는 티슈를 포함한다)

별표 6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8조제1호에 따른 포장재	가. 종이팩	
	1) 멸균팩	kg당 519원
	2) 일반팩	kg당 279원
	나. 유리병	kg당 34원
	다. 금속캔	
	1) 철캔	kg당 87원
	2) 알루미늄캔	kg당 151원
	라.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1) 발포폴리스티렌(EPS)·발포폴리프로필렌(EPP)·발포폴리에틸렌(EPE) 단일·복합재질 포장재	kg당 317원
	2) 폴리염화 비닐(PVC) 단일·복합재질 포장재	kg당 981원
	3)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포장재	
	가) 단일재질 무색	kg당 178원
	나) 단일재질 유색	kg당 235원
	다) 복합재질	kg당 360원
	4) 1)부터 3)까지 외의 단일재질 용기류 및 트레이	kg당 327원
	5) 1)부터 3)까지 외의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형 포장재	kg당 467원
	6) 1)부터 5)까지 외의 복합재질 포장재	kg당 467원

별표 6 비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호가목에서 “멸균팩”이란 제18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으로서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것을 말한다.

2. 제1호가목의 “일반팩”이란 제18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으로서 합성수지가 부착된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가목의 멸균팩은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3호바목, 별표 6 제1호 및 같은 표 비고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 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10일 이후에 제조 또는 수입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10일 이후에 제조 또는 수입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① 법 제12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 용기”란 다음 각 호의 제품·재 료·용기를 말한다.		제10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①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별표 1의3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소매업자가 제조하 거나 수입한 제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제품은 제외한다.		6. ----- ----- ----- -----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u><신 설></u>		<u>다.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u> <u>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u> <u>원순환보증금(이하 “자원</u> <u>순환보증금”이라 한다)이</u> <u>가격에 포함된 1회용 컵</u>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 재료·용기”란 다음 각 호의 제 품·재료·용기를 말한다.		② ----- ----- ----- -----.		

1. · 2. (생략) 3. 제1항제6호에 따른 플라스틱 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가. ~ 마. (생략) 바. <u>환경부장관과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에 관하여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행방법을 정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사업자 단체 등을 포함한다)가 제조한 제품</u> 제16조(분리배출 표시 제품·포장재)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란 다음 각 호의 제품·포장재를 말한다.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장재. 다만, 다음 각 목의 포장재는 제외한다. 가. <u>법 제15조의2에 따른 빈용기보증금(이하 “빈용기보증금”이라 한다)이 포함</u>	1. · 2. (현행과 같음) 3. ----- ----- ----- 가. ~ 마. (현행과 같음) <삭제> 제16조(분리배출 표시 제품·포장재) ----- ----- ----- ---. 1. ----- -----. ----- --. 가. <u>자원순환보증금</u>----- ----- -----
---	---

된 제품의 용기

나.·다. (생략)

2. (생략)

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포장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포장재의 견본품 및 반품되어 폐기된 제품·포장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만 해당한다], 유리병, 금속 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쟁반형 용기(tray)를 포함하며, 제2호 각 목의 제품의 포장재는 제외한다]

가. ~ 타. (생략)

나.·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

---.

1. -----

----- 금속 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을 제외한 -----

가. ~ 타.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u>합성수지재질</u>의 포장재(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를 말한다) 가.·나. (생략) 3. <u>합성수지재질</u>의 1회용 봉투·쇼핑백(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제외한다) 3의2. <u>폴리염화비닐(PVC)</u> 재질을 제외한 합성수지재질로 된 다음 각 목의 필름류(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포장재는 제외한다) 가. ~ 마. (생략) 4. ~ 11. (생략)	2. ----- ----- <u>폴리염화비닐 재질</u>을 <u>제외한 합성수지재질</u>----- ----- -- 가.·나. (현행과 같음) 3. <u>폴리염화비닐 재질</u>을 제외한 <u>합성수지재질</u>----- ----- 3의2. <u>폴리염화비닐</u> ----- ----- ----- ----- ----- 가. ~ 마. (현행과 같음) 4. ~ 11.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연 락 처	(044) 201 - 7386